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1038
------------	------

2019. 12. 1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9. 9. 26. 김태수 의원 1인 발의 (2019. 10. 22. 회부)

2. 제안이유

-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의2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김태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건강,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제2호, [붙임] 참조).
- 이에 따라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주거약자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2019.8.6)¹⁾되어, 시·도지사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1) 「주거약자법 시행령」 제10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6.]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주거실태조사 시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단순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별도의 쟁점사항은 없음.
- 참고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민감정보와 함께 ‘고유식별정보²⁾’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19.8.6)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고령자, 수급가구 등 주거지원 대상의 실태과약을 통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토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파악됨. (붙임-2.참조)
- 유사한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조례안이 건강관련 민감정보만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은 상위법령인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것인 바, 향후 주거약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건의를 통해 실태조사 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 은 정
연 락 처	02-2180-8208
이 메 일	urbanth@seoul.go.kr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붙임-1】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6.]

【붙임-2】 「주거기본법 시행령」 규제영향 분석서(개요, 국토교통부)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준		
	2.규제조문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		
	3.위임법령	주거기본법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9.5.15~'19.6.2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을 위해 개인 건강 등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취급이 불가피하나, 관련 규정 부재로 원활한 주거복지정책 추진에 어려움		
	7.규제내용	기존 주민등록번호 취급허용 뿐 아니라, 건강 등 민감정보, 여권번호·외국인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주거실태조사도 추가하는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 강화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주거지원정책 대상이 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음		
	9.규제목표	장애인, 고령자, 수급가구 등 주요 주거지원 정책 대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등 주거지원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장애인, 고령자 등 정책지원 대상의 개인정보 침해우려는 있으나, 이를 통해 주거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지원함으로써 주거복지 강화라는 공익 달성의 편익이 보다 큼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